김포시 도시숲등 조성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288호

제출년월일 2023. 9. . 제 출 자 김포시장

1. 제안이유

○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도시공원위원회와 통합·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위원회의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대행 근거 신설 나.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규정 삭제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 붙임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7. 5. ~ 7. 25. (20일)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부서협의결과

가) 규제사전심사: 해당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다)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가) 중앙부처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나) 경 기 도 : 정원산업과

김포시 도시숲등 조성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도시숲등 조성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기능)"을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시장"을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김포시 도시공원위원회가 대신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자(이하 "원인자""를 "자(이하 "원인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공원녹지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성 명	공원녹지과장 정 성 현
	팀 장 직위·성명	도시녹화팀장 양 미 애
	담 당 자 성명·전화	지방녹지주사보 이준호(☎2366)

개 정 안 혂 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 제2조(정의) ------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_____ 제3조(도시숲등의 조성 · 관리 심의위 제3조(도시숲등의 조성 · 관리 심의위 워회) ① -----원회 기능)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 라 김포시에 설치한 도시숲등의 조 성·관리 <u>심의위원회(이하 "위원</u> ----- 심의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는 도시숲등의 조성 ·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하다.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 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 김포시장(이하 "시장" 정하는 사항 이라 한다)-----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신 설〉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 한 조례」에 따른 김포시 도시공원위 원회가 대신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 〈삭 제〉 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 원장은 도시숲 관련 업무 담당 국장 이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 이 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 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도시숲등의 조성 · 관리와 관련하 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4.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업무 관 련 공무원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 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숲등의 조성 · 관리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회 규정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위 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를 따 른다.

제5조(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승 제5조(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

인)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 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 에게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 ------ 별지 제 2호 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2호서식-----통보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③ (생략) 제6조(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부 제6조(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부담 담금) ① 제5조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u>자(이하 "원인자" -----</u>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부담 하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①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중 도, 구 및 광역시의 군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1.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 ·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 ·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도시숲등의 조성 · 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김포시 도시숲등 조성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기능)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김포시에 설치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 ·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 ·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도시숲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도시숲등의 조성 · 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4.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업무 관련 공무원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담당 부서장으로 하다.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회 규정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본조례」를 따른다.
- 제5조(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장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이하 "가로수 조성등"이라 한다)의 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승인 불가 통보를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가로수 조성 ·관리에 관한 부담금) ① 제5조에 따라 가로수 조성등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부담한다.
 - ② 제5조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부담금 비용의 산출은 별표의 훼손자 ·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에 따른다.
 - ④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에 피해를 입힌 자에게 별표의 훼손자 ·원인자부 담금의 산정 기준에 따라 훼손자부담금을 징수 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직접 원상 복구한 경우에는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로수 훼손의 경우에는 나무가 죽을 경우를 고려하여 원상복구 상당금액을 2년간 예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